

# 예산총칙

202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25,273,064	18,758,192
일반회계	606,832,661	18,204,980
특별회계	18,440,403	553,212
기타특별회계	18,440,403	553,212
상수도사업특별회계	13,240,712	397,221
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	10,200	306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	10,488	31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201,285	36,039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	3,977,718	119,332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"과 같다.

제 3 조 202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총예비비는 16,158,043천원으로 그중 일반예비비는 2,000,000천원 이며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5,467,090천원, 내부유보액 3,304,83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분한도액은 26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